

##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사실관계

-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했고, 나아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른 전후 국제질서를 위협한다는 일본의 주장은 완전한 허구임.
-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따라 체결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 기간에 발생한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 청산만을 규정하고 있고, 한국은 청구권협정을 준수하고 있음.
- 또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연합국이 일본의 전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권을 포기(제14조)한 것으로, 대한민국은 연합국이 아닌 식민지배 피해국으로서 동 조약의 당사국이 아님.
-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问题是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함. 청구권협정 체결에 이르는 지난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요소는 청구권협정에 반영 될 수 없었음.
- 전후 일본 정부의 입장도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바 없다는 것이었음.
- 결론적으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에 대한 책임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도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동원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임.

한국이 청구권협정을 위반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일방적·자의적인 것으로 역사 수정주의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 바, 일고의 가치도 없음. 끝.